



고득점에 필수적인 행정학 법령 총정리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행정학



이공이사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을 펴내며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3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4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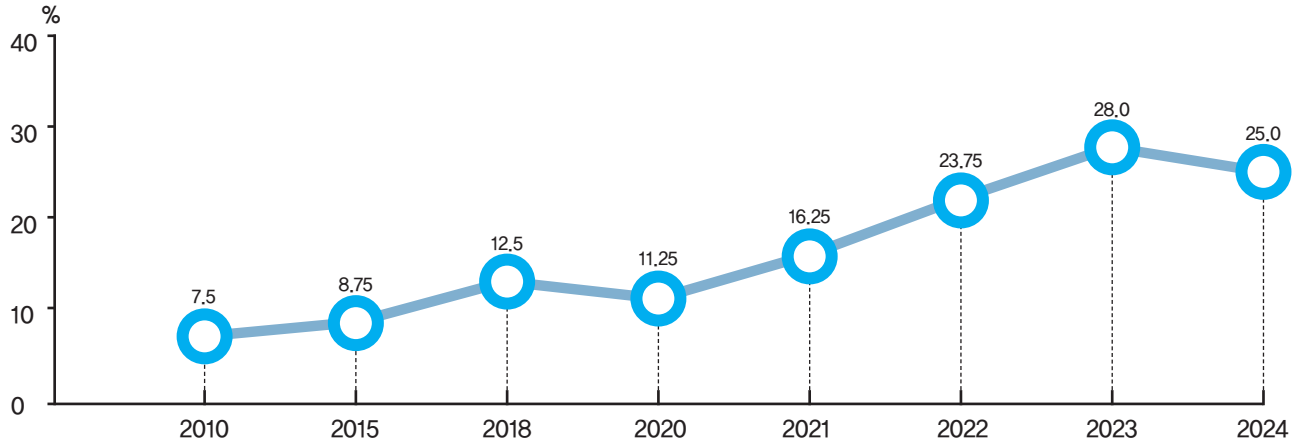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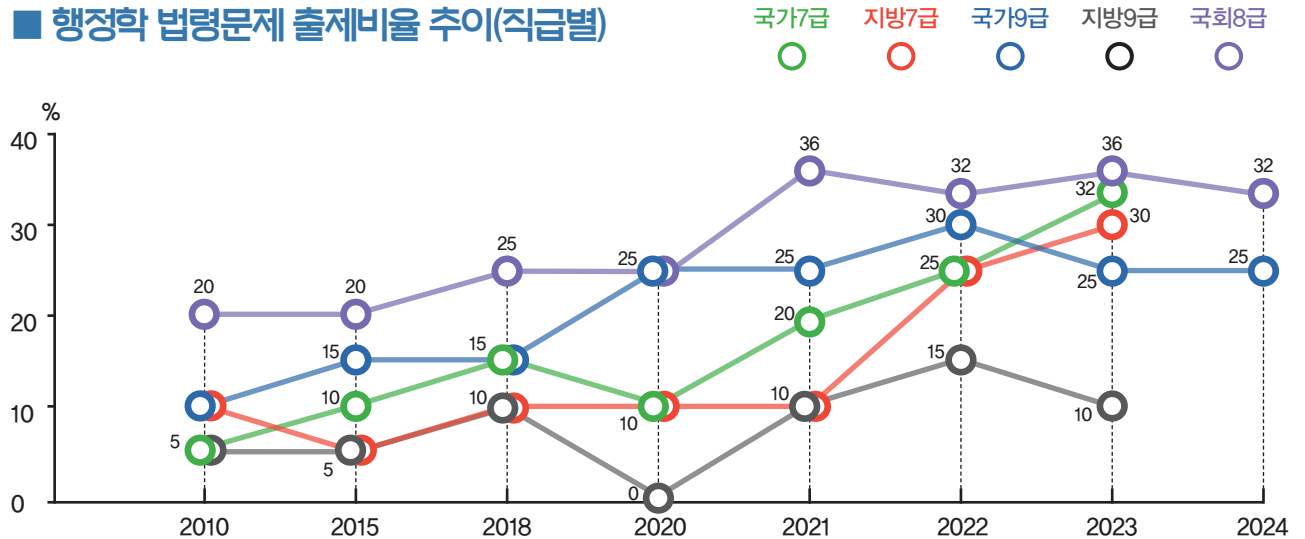
2024.5.5.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김중규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전체 평균)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직급별)



이 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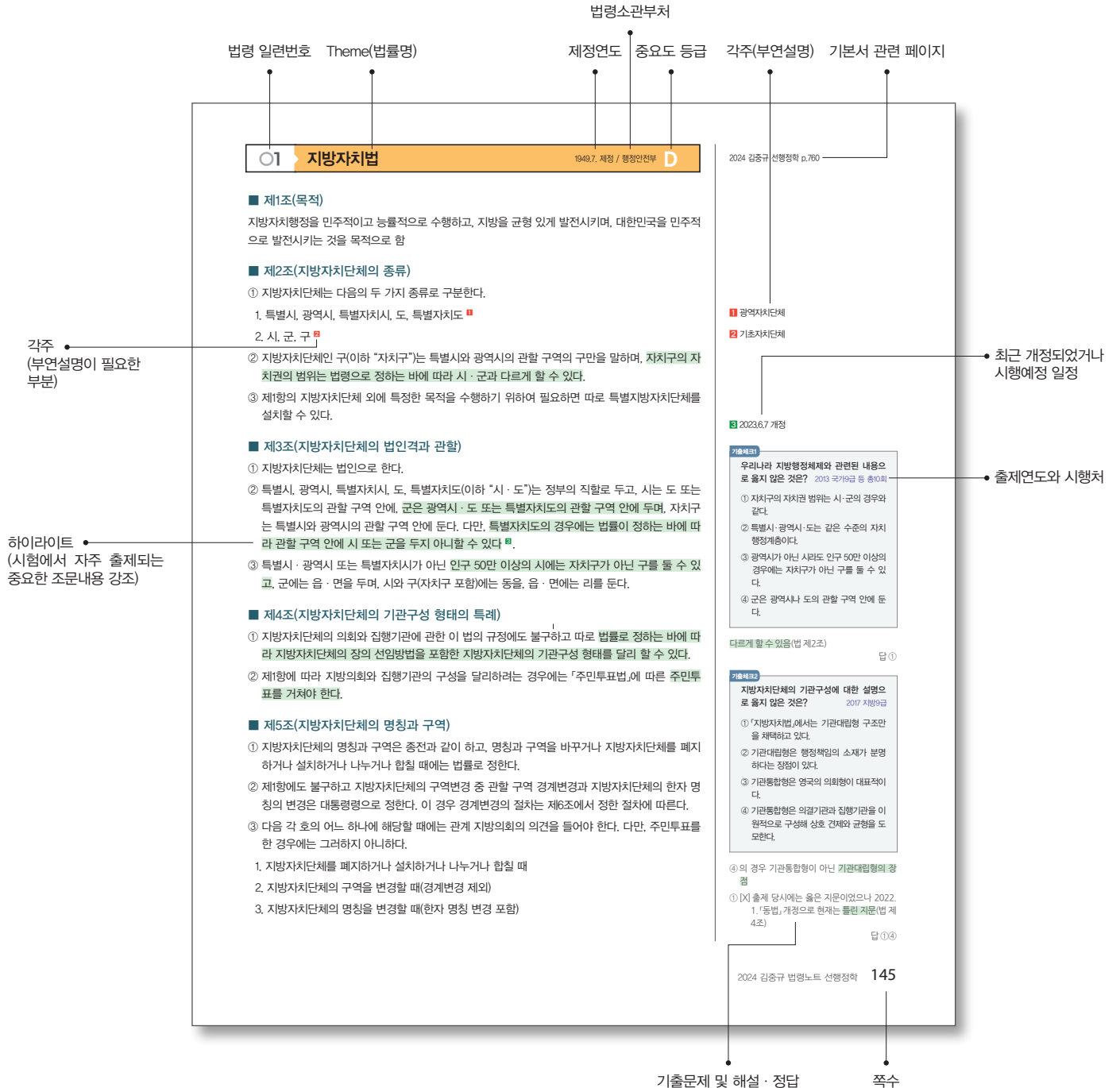
1. 최근 행정학시험에서 고난도 법령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2024 국가9급 5문, 2023 지방7급 지방자치론 13문, 2023 국가7급 8문 등). 이 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비한 책입니다.
2. 최근 언뜻 보면 법령문제가 아닌 듯한 생소한 고난도 문제의 지문들도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법령조문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학 수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하여 행정학 관련 법령 80여개를 정밀 분석하여 수험 적합한 방향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혼란과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조문을 수록하지 않고 행정학과 깊게 관련된 중요한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수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6. 최근 개정되었거나 향후 시행될 내용은 우측 날개에 녹색 글씨로 첨삭 표기해 두었습니다.
7.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인용)한 경우 그 내용을 우측 날개에 주홍색 글씨로 부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8. 법령조문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행정이론이나 제도를 알기 쉽게 강학상(학문적) 용어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9. 모든 법령에 대하여 그 소관부처와 제정연도를 표기해두었습니다.
10.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날개에 수록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1. 법령별로 중요도를 ABCD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12. 법령별로 기본서 페이지를 표기하여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13. 법령 제목과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교재 뒤쪽에 "찾아보기"를 두었습니다.
14. 이 교재는 어디까지든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한 보조교재 일뿐, 주교재는 아니니 이 교재를 기본서처럼 회독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 2024.6.2.과 6.9. 양일간 법령대비 단기특강이 공단기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시면 학습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16. 법률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 등 대통령령이나 훈령·예규도 필요한 조문들은 수록하여 법령간 연계성 및 완벽함을 기하였습니다.
17. 이 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날개의 기출체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 법령조문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난도 법령문제, 이렇게 대처하자!

1. 중요한 법령내용은 기본서와 기출집 등 선행정학 교재에 거의 다 있습니다.
2. 중요하지 않은 법령내용까지 세세하게 모두 알 수는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3. 법령문제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는 공부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예상치 못한 법령문제에 응급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령(매뉴얼)은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이 법령자료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기본교재에 부가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법령내용을 따로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말고 가급적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론적인 내용과 연결시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욱 입체적이고 탄탄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7. 최근 제·개정된 법령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법령은 항상 이슈가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8. 모든 법령은 소관부처가 있습니다(소관부처를 바꾸어 출제하는 것이 기출패턴입니다).
9. 외국인도 안보·기밀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상 대부분의 권한을 가집니다.
10. 행정기관 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되고 위원수는 15명(홀수)이 가장 많으며, 임기는 2~3년, 한차례 연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1. 중요한 행정기관 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들어가는 3인방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12. 법령은 모든 조문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이슈화(쟁점)가 되었거나 최근 개정된 조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13. 법 제1조 "목적"에 관한 지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제1조(목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공통된 행정이념은 능률성과 민주성입니다.
14. 법 제2조 "적용범위" 또는 "정의"가 법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가 법마다 다르며, "각급 학교"도 사립학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영란법」이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립학교도 포함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외됩니다.
15. 기금도 예산과 그 일정, 대상사업 등이 거의 동일합니다(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국회 승인 등).
16. 본조문(원칙)만 인용하고 단서(예외) 조항은 생략되어도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17. 법령상 각종 제도들은 제·개정(도입)된 연도와 시행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예산제도는 1년 시차가 있습니다).
18.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사, 예산, 감사, 전자정부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 최근 중요한 행정제도들의 역사와 변천에서 고난도 킬러문제가 많이 나오니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제도(공무원연금제도, 중앙인사기관, 중앙예산기관, 공무원노조제도, 지방자치제도, 전자정부 등)는 해당 법령의 연혁(history)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STRUCTURE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01 대한민국 헌법	11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4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5
04 행정규제기본법	16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8

제2장 정책론 관련법령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	----

제3장 조직론 관련법령

01 정부조직법	29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1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7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

제4장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공무원법	47
• 공무원임용령	57
• 공무원임용시험령	60
• 전문경력관규정	61
•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2
•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3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5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68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70
• 공무원 징계령	72

• 적극행정운영규정	73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75
• 공무원보수규정	76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8
02 외무공무원법	79
03 경찰공무원법	80
04 소방공무원법	81
05 교육공무원법	82
06 지방공무원법	83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4
0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6
09 공무원연금법	87
10 공직자윤리법	90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4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7
• 공무원 행동강령	100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101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3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5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재정법	109
• 국가재정법 시행령	119
02 정부기업예산법	121
03 국세기본법	122
04 국고금관리법	123
05 국가회계법	124
•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125
06 조세특례제한법	126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27
08 국채법	128

제6장 환류행정론 관련법령

01 국회법	131
02 인사청문회법	133
03 국회사무처법	135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 O N T E N T S

04 헌법재판소법	136
0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7
06 감사원법	139
07 전자정부법	142
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5
09 지능정보화기본법	146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7
11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8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149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01 지방자치법	15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2
0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73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5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76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7
06 지방재정법	180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86
08 지방회계법	188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189
09 지방세기본법	190
10 지방세법	193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95
12 지방교부세법	197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99
14 부담금관리기본법	200
15 지방공기업법	201
16 고향사랑기부금법	203
17 공직선거법	204
18 주민투표법	205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8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9
2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1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2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14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15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16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55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5조

-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기출체크1

예산불성립시 헌법규정에 의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은? 2017 국회9급 등 총4회

- ① 공무원 보수
- ②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 ③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④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②는 해당되지 않음(헌법, 제54조)

답 ②

11 준예산제도

기출체크2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수정)

- ①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 ④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국회법, 제44조)

- ① [O] 「국가재정법」 제33조
- ② [O] 「헌법」 제54조

답 ④

2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5년 이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국회의결로 연장 가능

3 국고채무부담행위

4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 조세법정주의

■ 제1조(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 제2조(정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제6조(보조금의 지원)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보완적 관계

기술체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 국가9급

-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며,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법 제9조)

- ① [O] 법 제2조
- ② [O] 법 제6조
- ③ [O] 법 제8조

답 ④

1 동법은 행정부에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입법) 등 헌법 상 독립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규제법정주의

3 규제최소주의

4 네거티브규제제도

5 규제샌드박스제도

6 규제등록주의

7 규제영향분석제도

■ 제1조(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

■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제4조(규제 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제5조(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제1조(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 도모

■ 제2조(정의)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의2.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BTO(Build Transfer Operation)

2 BTL(Build Transfer Lease)

3 BOT(Build Operate Transfer)

4 BOO(Build Own Operate)

기출체크1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2020 서울·지방9급 등 총3회

- ① BTO(Build-Transfer-Operate)
- ② BTL(Build-Transfer-Lease)
- ③ BOT(Build-Own-Transfer)
- ④ BOO(Build-Own-Operate)

BTL 방식에 해당(법 제4조)

- ① [X] 법 제4조 제1호
- ③ [X] 법 제4조 제3호
- ④ [X] 법 제4조 제4호

답 ②

■ 제1조(목적)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¹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²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³
 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4,5}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⁶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⁷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2조(국무회의)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 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¹ 제2항의 9개 중앙행정기관(3청 6위원회)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² 「행복도시법」 제38조(행복도시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³ 「새만금사업법」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둔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⁴ 2024.5.27. 시행(2024.1.26. 「정부조직법」 개정)

⁵ 「우주항공청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⁶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⁷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

■ 제2조(정의)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 ①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 ②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 ① 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③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으로 보한다.

기출체크1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9급

-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부속기관에 대한 맞는 설명(영 제2조 제3호)

- ② [X]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영 제2조 제7호)
- ③ [X]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영 제2조 제5호)
- ④ [X] **행정기관**임(「정부조직법」 제5조 및 영 제21조)

답 ①

■ 제1조(목적)

국가공무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함

■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①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칭하는 공무원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칭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칭하는 공무원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법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 ②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별정직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¹⁾)의 군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은 제외²⁾)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³⁾ 및 지방교육행정기관⁴⁾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김중규 선행정학

- 공직분류 p.477
- 중앙인사관장기관 p.468
- 소청심사 p.546
- 공무원의 의무 p.559
- 징계 등 신분보장 p.543

기출체크1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지방9급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적격자 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임용제청할 수 있음

- ① [O] 법 제2조의 2 제3항
- ② [O] 법 제2조
- ③ [O] 법 제28조의 4

답 ④

¹⁾ 「외무공무원법」상 외무직(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공사급이상 직위) 등

²⁾ 고위감사공무원단 별도 운영(「감사원법」 제7조의 2)

³⁾ 부단체장(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 및 행정부시장 등) 등

⁴⁾ 부교육감

■ 제1조(목적)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

■ 제5조(평가 시기)

-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 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과 연구관·지도관 및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방법)

-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기출체크1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9급(수정) 등 총2회

- ①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③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④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영 제 12조)

- ① [O] 영 제1조
- ③ [O] 영 제7조및 제12조

답 ②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B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① 소속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 포함)로 지정(변경 및 해제 포함)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
 -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
 - 2.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기출체크1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교행9급

- ① 경력개방형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 ②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직위가 아니라 **개방형직위**(영 제3조)

- ② [O] 영 제3조
- ③ [O] 영 제10조
- ④ [O] 영 제13조

답 ①

■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의 임용

■ 제1조(목적)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 제2조(주관)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 제3조(정의)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총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기여금”이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

■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애급여
4. 퇴직수당

■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기술체크1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등 총3회

-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단독부담(법 제73조)

- ① [O] 법 제2조 및 제4조
- ② [O] 법 제76조
- ③④ [O] 법 제67조

답 ⑤

기술체크2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경정승진

- 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 ② 연금조성 방식은 기금제와 기여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③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법 제2조)

- ② [O] 법 제67조 및 제76조
- ④ [O] 법 제67조

답 ③

■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순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기술체크1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 국회8급

-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 적용된다.
- ②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대령 이상의 군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할 수 없다.
-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 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의무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공립학교**

- ② [O] 「공직자윤리법」 제3조
-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⑤ [O]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답 ①

기술체크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2024 국가9급

-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직무관련자**(법 제2조)

- ①③④ [O] 법 제2조

답 ②

제1조(목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 포함)·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제1조(목적)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

■ 제5조(기금의 설치)

-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①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②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의 증가율 및 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기출체크1

「국가재정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지방7급

- ①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② 재정의 투명성이란 재정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반 사항 및 경과를 일반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재정 건전성은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운용을 의미한다.
- ④ 성과지향성이란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도 적용된다.

효율, 성과, 투명, 건전, 공공은 규정되어 있지만 형평은 규정되어있지 않음(법 제1조)

답 ①

1 「고용보험법」 등 7개 법률

2 의무지출의 구체적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

- 1. 기술보증기금
- 2. 신용보증기금
-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5. 무역보험기금
- 6. 신용보증기금
-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9.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 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금관리법」에 재정증권

기출체크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9급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국고채와 재정증권도 포함됨(법 제4조)
① [O] 「국가재정법」 제91조
② [O] 「국채법」 제5조
답 ③

■ 제1조(목적)

국채의 발행·등록과 원금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

■ 제2조(정의)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
 -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 제5조(국채의 발행)

-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조(목적)

국회의 조직·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제21조(국회사무처)

- ①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4조(특별위원회)

-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¹

■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를 연다.
-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

기출체크1

국회의 예산심의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국회9급 등 총4회

-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록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ㄱ [O] 법 제84조
 ㄴ [O] 법 제85조의 3
 ㄷ [X]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기가 보장되며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음(법 제45조)
 ㄹ [X] 동의없이 설치할 수 없음(법 제84조) 답 ①

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없는 상설 위원회임

² 「인사청문회법」

■ 제1조(목적)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제2조(정의)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기술체크1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2022 국가9급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 ① 전자문서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 ③ 정보시스템 ④ 정보자원

정보기술아키텍처(법 제2조)

답 ②

기술체크2

현행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7급

-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 ③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행정기관 편의가 아니라 국민편익(법 제4조)

②③④ [O] 법 제4조

답 ①

■ 제1조(목적)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¹
2. 시, 군, 구 ²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³.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다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 제외)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 변경 포함)

2024 김중규 선행정학

- 자치단체 종류 p.797
- 사무배분 p.814
- 주민감사청구 p.852
- 조례 p.765
- 지방의회 p.806
- 집행기관 p.808
- 지방예산 p.831
- 분쟁조정 p.790
- 광역행정 p.792
- 중앙통제 p.783
- 특별자치단체 p.792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3 2023.6.7 개정

기출체크1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9급 등 총10회

-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르게 할 수 있음(법 제2조)

- ② [O] 법 제2조
- ③ [O] 법 제3조
- ④ [O] 법 제3조

답 ①

기출체크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9급

- ①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④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의 장점

- ① [X] 출제 당시에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2022. 1. 동법 개정으로 현재는 틀린 지문(법 제4조)

답 ①④

기술체크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 ③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

- ① [O] 법 제36조의 2
- ② [O] 법 제11조 제5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42조

답 ③

기술체크2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8 지방7급 등 총3회

-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총당
-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 ④ 지방채의 차환

③은 해당하지 않음(법 제11조)

- ①②④ [O] 법 제11조

답 ③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의 총당
 -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4. 지방채의 차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2024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정학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판 2024년 5월 16일

펴낸이 김종규

펴낸곳 (주)가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48-3

값 18,000원



9 791192 405483